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66호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재난대응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복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 진작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속공무원의 의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7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windhwan80@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보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

발의연월일 : 2026. 10. 15.

발 의 의 원 : 성보빈・곽은정・구점득・권순재・김동엽 김수민・김인애・남재욱・남호준・류성국 박연정・박영주・백승규・변보미・심임숙 이원주・이정희・전태완・정은미・지상록 황점복 의원(21명)

1. 제안이유

재난대응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복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 진작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속공무원의 의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7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속공무원의 재난대응이나 현장활동 등에 필요한 의복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제4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 ---------- ------. 1. ~ 6. (현행과 같음) 7. 소속공무원의 재난대응이나 현장활동 등에 필요한 의복의 지원 8. (현행 제7호와 같음)

참고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참고 **현행 조례**

■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서 정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 등 지원
2.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문화탐방 등 지원
3.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및 생일 축하 선물 제공
4.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품 제공
5. 삭제
6. 소속공무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및 공무직의 6세 미만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7.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후생복지지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콘도)제공

제6조(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 담당국장,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회 의원
3. 학계, 지역경제,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청할 때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협의회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삭제 <2025. 9. 30.>

제15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사업 및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삭제 <2025. 9. 30.>

제17조삭제 <2025. 9. 30.>